

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4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4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행정기관의 "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"에 따라 토요일 휴무의 근거를 마련하고, 현행 규정상 휴직자가 복직을 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가.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 (안 제16조의2).
- 나.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"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"하는 방식에서 당해 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"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"하도록 함 (안 제20조제2항 신설).
- 다.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(안 제22조).

□ 개정조례안 : 별 첨

-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 첨
- 관계법령발췌서 : 별 첨
 - 지방공무원법 제59조
-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-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- 사전예고(결과) : 해당없음
- 기타 참고사항 : 별첨

-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(경기도 총무12100-11633, 2002.3.25)
- 현행조례(전문)

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의 제목 “(토요전일근무제)”를 “(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)”로 하고, 동조제1항중 “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”를 “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,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”로 하며, 동조제2항중 “토요전일근무제”를 “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”로 한다.

제20조제1항중 “휴직일수 · ”를 삭제하고,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,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.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,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,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.5일이상은 반올림 하고, 0.5일미만은 절사한다.

$$\textcircled{O} \text{ 휴직자의 연가일수} = \frac{12\text{월} - \text{당해연도 휴직기간(월)}}{12\text{월}} \times \text{당해년도 연가일수}$$

제21조제1항 후단중 “제20조제3항”을 “제20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총 무 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총무과장 이 권 현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총무담당 안 상 철
	담당자 성명·전화	박 문석 (행정 2112)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의2 (<u>토요전일근무제</u>) ①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 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<u>토요전일근무제</u>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</p>	<p>제16조의2 (<u>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</u>)</p> <p>①—————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,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<u>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</u>—————</p>
<p>제20조 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 ①결근일수· <u>휴직일수</u>·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</p>	<p>제20조 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 ①————— <u>〈삭 제〉—————</u></p> <p>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 한다.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,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,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.5일이상은 반올림 하고, 0.5일미만은 절사한다.</p> <p>○ 휴직자의 연가일수 = $\frac{12월 - 당해년도 휴직기간(월)}{12월} \times 당해년도 연가일수$</p>
<p>② (생략)</p>	<p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
<p>③ (생략)</p>	<p>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21조 (병가)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·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, <u>제20조제3항</u>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 ② ~ ③ (생략)</p>	<p>제21조 (병가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20조제4항</u> ----- -----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 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2조 (공가) 소속 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적절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 5. <u>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</u> <u>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</u></p>	<p>제22조 (공가)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</u> <u>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</u></p>